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해 원인조사 대상의 확대 및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 등〉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5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중상해재해 정의 규정 신설 및 재해 원인조사 대상에 중상해재해 포함	3
2. 공단 등의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참여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6
3. 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의 법률적 근거 마련	11
4. 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18
5. 중상해재해 원인조사의 민간 위탁 근거 신설	24

I. 제안경위

2024년 8월 8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8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 시 고용노동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상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된 700~80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산재사업장의 범위반사향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고예방활동,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재해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더욱 필요한 사항임.

이에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및 제56조).

또한, 재해조사가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마지막으로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0조제2호 및 제162조제3호의2·제16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상해재해 정의 규정 신설 및 재해 원인조사 대상에 중상해 재해 포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중상해재해’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상해재해도 중대재해와 같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56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3. ~ 13.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중상해재해”란 <u>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u> 4. ~ 14. (현행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제56조(중대재해 <u>원인조사</u>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중대재해</u>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제56조(중대재해 및 <u>중상해재해</u> <u>원인조사</u> 등) ① ----- <u>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u> ----- ----- -----

수 있다. <후단 신설> (이하 생략)	----- --. 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 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 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현행법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중상해재해’라 정의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상해재해에 대하여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해 원인조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나 자료 축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중상해재해를 정의함에 있어 기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규정한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상해재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중상해재해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90일 이상 재해의 경우 한 해 6만여 건으로 조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84일 이상 입원 재해’까지 조사 했던 2012년 당시, 조사대상 방대, 조사 이후 사법조치 등에 행정력 집중으로 산재예방 역량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사망재해 중심 조사로 정책 방향이 변경된 점, 중대재해와 중상해재해의 발생 경위, 원인이 유사하여 중상해재해로 재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연도별 요양일수 90일 이상 사고부상자수 】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3,440	56,684	58,019	61,465

2. 공단 등의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참여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를 할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등에 사업장 출입과 관계자 면담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중상해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및 공단등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17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중대재해 <u>원인조사</u>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중대재해가</u>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6조(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u>원인조사</u> 등) ① ----- <u>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u> ----- ----- ----- ----- --. <u>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u>중대재해가</u>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	② ----- <u>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u> -----

전보건의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 8. (생략)

-----.

③ -----및 중상해 재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
-----.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⑤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0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

-----및 중상해재해 발생-----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의-----

3.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6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훈령 제44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도록 하며,¹⁾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음과 같이 관련 분야 자격³⁾.

- 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 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 2)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재해조사방법)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3) 기술사(18명*), 기능장(1명**), 기사(60명), 산업기사(14명), 기능사(2명) 등
* (기술사 보유 현황) 1명이 2개 이상 보유 시 중복 산정

구분	안전분야							보건분야		건설분야		
분야	가스	화공	소방	기계 안전	전기 안전	화공 안전	발송 배전	산업 위생	인간 공학	건축 시공	토목 시공	건설 안전
인원	1	1	1	3	1	4	1	1	2	2	1	5

면허⁴⁾·학위⁵⁾ 등을 갖춘 70여 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중앙사고조사단과 광역사고조사단에서 매년 700건이 넘는 재해조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원인조사 지원건수]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조사건수(건)	775	793	757	763

그러나 현행법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공단 직원이 사고발생 설비의 상태, 사고발생 물질 확보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 공정 확인, 목격자를 포함한 관계자 면담 등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⁶⁾ 특히 현행법상의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이기도 하지만, 중대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유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그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의

* (기능장 보유 현황) 위험물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1명이 2개 보유)

4) 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 등 산업안전지도사 8명 보유 중

5) 안전공학 등 박사 3명, 건축·산업위생 등 석사 21명

6) 2023년 8월 8일 (주)샤니에서 근로자가 설비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에 대해 사고발생 초기 현장출동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이 사고유발 설비 작동성능, 안전장치 등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경찰이 조사권 없는 공단의 조사에 대해 이의 제기

수사와는 접근 방법이나 조사 범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⁷⁾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의 현장 출입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기술지원을 위하여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참여하는 현 상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의 현장 출입을 법률상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정보 수집, 면담 진행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과정에서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해 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7) 항공철도조사위원회나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부 등의 사고조사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과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p. 7 [표] 사고조사에 관한 유사 입법례 중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6항 참조)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다만, 중상해재해 원인조사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개념 신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이 부분에서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함

3. 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의 법률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중대재해·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6조의2(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재해조사의견 공개 검토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1. <u>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u> 2. <u>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u> ③ <u>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원인 조사의 공개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6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훈령 제44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도록 하며,⁹⁾ 한국

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 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함께 조사하여 그 조사의 결과물을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처리에 있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해당 중대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

그런데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나 수사결과보고서는 영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 등 사업장의 비밀이 포함될 수 있고,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사업주의 법률 위반 여부, 즉 사실상 수사의 전단계로 실시되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¹¹⁾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 10)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8조(재해조사방법)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1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함께 조사하여 작성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와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처리에 있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중대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입법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¹²⁾

개정안은 조사한 중대재해·중상해재해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한정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리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사가 동종·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고 조사보고서의 원칙적인 공개 원칙과 충실한 원인조사를 위한 다른 법률상의 절차와의 분리 등을 규정한 다음의 유사 입법례와 공개 정보의 형태 및 시기 등을 제한하여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2)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사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내용을 가공하여 국내재해사례, 재해사례집, 이슈리포트 등의 형태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몇몇 선별된 사례에 관해서 요약된 내용만 공개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의 기술적·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lth Administration)과 같은 유사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심도있는 조사와 조사 결과의 투명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면서도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사고조사에 관한 유사 입법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제26조에 따른 권고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② (생략)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 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생략)

[재해조사 보고서 해외 공개 사례]

구 분	공개형식	공개내용	공개시기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데이터 및 인용문 공개	재해 개요, 업종, 조사 주체 등	<u>조사완료 후 6개월 이내 공개 여부 결정</u>
	<u>조사보고서 비공개</u>	구체적인 원인 및 대책 등 비공개	-
NIOSH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u>조사보고서 (재해사례) 형식 공개</u>	재해 개요, 직·간접 원인,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 <u>법 위반 확정 이후</u> · <u>사업주 비동의 시</u> · <u>작성·공개하지 않음</u>
HSE (영국, 안전보건청)	데이터 공개	사고경위, 적용법조, 구형 등	<u>법원 유죄 판결 9주 후</u>

자료 : 고용노동부

또한, 개정안 제56조의2제1항의 내용 중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검토위원회 관련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항이 위원회의 자격기준인지, 위원회의 임기나 신

분에 관한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과정에서의 역할에 있어 의결기관인지 심의기관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하위 법령에의 위임 근거도 규정되지 않은바,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재해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개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재해조사의견 공개 검토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중대재해·중상해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호의2 및 제162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비밀 유지)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 및 중상해재해 조사에 참여하는 자</u>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u>

	에 참여한 공단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¹³⁾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¹⁴⁾,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¹⁵⁾ 안전인증을 하는 자,¹⁶⁾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¹⁷⁾ 안전검사를 하는 자,¹⁸⁾ 자율검사프

- 13)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 15)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16)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17)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18)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로그래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¹⁹⁾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²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²¹⁾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²²⁾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²³⁾ 건강진단을 하는 자,²⁴⁾ 역학조사를 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1)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자,²⁵⁾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²⁶⁾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⁷⁾ 이는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23)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4)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5)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8. 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유지하는 것이 비밀의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라는 비밀의 속성상 영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 등 사업장의 비밀을 비교적 지득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자에게 요청되는 의무로서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음.²⁸⁾

개정안은 중대재해·중상해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도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중대재해·중상해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가 현행법에 열거된 자와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의 비밀을 지득할 수 있고,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로서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²⁹⁾ 현재 고용노동부는 재해원인조사 의견

27)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28) 「건설기술 진흥법」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형법」 제126조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수사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음.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권리나 수사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공공성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임.

다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체의 명확성을 위하여 안 제162조의2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³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 시 기술적 원인 분석 등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업장의 공정, 작업 내용, 사용 기계·기구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의 비밀을 알게 될 수 있어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수뢰 혐의 등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30) 공단 등은 → 공단 등의 임직원은

5. 중상해재해 원인조사의 민간 위탁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중상해재해 원인조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u>10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상해재해 원인조사</u>
11. ~ 41. (생략)	11. ~ 41.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위탁하고 있

음.³¹⁾ 개정안은 중상해재해 원인조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비영리법인·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수행에 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의 전문성의 정도나 위탁을 통하여 제고될 수 있는 조사업무 수행의 능률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개정안 제56조는 중상해재해 원인조사의 권한이 현행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에 있음을 전제로 공단 등의 참여 근거를 신설하여 중상해재해 원인조사에 있어 공단의 보조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안 제165조는 중상해재해 원인조사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 등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 아래 중상해재해 원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³²⁾ 개정안 간 중상해재해 원인조사의 권한 부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둘째,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³³⁾ 및 「사법경찰

31) 현행법 제165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총 32개의 사무임. p.18 산업안전보건법상 공단의 위탁사무현황 참조

3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3)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²³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은 민간위탁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서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중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⁵⁾

34)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5)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따라서 조사 결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어 사실상 수사 전 단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민간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원인조사는 원인규명을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을 조사하고, 이는 수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수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공단에 업무 자체를 위탁하지 않더라도 재해조사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제56조로도 충분히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안전보건공단 등의 직원에게 위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